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기준서 번호 : H0-기술-절차-0001

제·개정 번호 : 8

제·개정 일자 : 2023. 06. 12

2009.11.18. 제 정
2011.12.09. 4차개정
2014.05.28. 5차개정
2017.10.16. 6차개정
2019.06.20. 7차개정
[2023.06.12. 8차개정](#)

작성 자 : 유 재 섭
(기술기획처 성과활용부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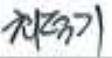

검 토 자 : 최 덕 기
(기술기획처 성과활용부장)

승 인 자 : 심 은 보
(기술기획처장)

1. 사용 구분

- 전사 적용
- 해당 사업소 전체 적용
- 작성부서만 적용(부서명 : _____)

2. 작성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유재섭		'23.6.7	최덕기		'23.6.7	심은보		'23.6.7

3. 관련부서 합의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4. 업무표준 관리부서 검토(ERP 등록시 품질경영처 합의결재선 자동지정)

5. 사규 관리부서 검토(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정보공개 및 제·개정 예고대상)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	-	-	-

6. 일상감사(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직 책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	-	-	-

담당 : 기술기획처 성과활용부 차장 유재섭(☎061-3771)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3/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제 · 개정 이력

No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승인일자	비 고
00	산업재산권 관리절차서 제정	마용희	김용덕	안 흡	2009.11.18	
01	산업재산권 관리절차서 개정	변영숙	박상호	박진홍	2010.05.27	
02	산업재산권 관리절차서 개정	이명찬	한경남	박상호	2011.03.08	
03	산업재산권 관리절차서 개정	윤현진	한경남	박상호	2011.05.25	
04	SOP 일반형식화 및 특허대리사무소 관리 등 개정	변영숙	박상호	박진홍	2011.12.09	
05	기술이전절차서 제정으로 인한 이전·도입 부분 삭제	이상명	권욱	원영진	2014.05.28	
06	직접자기실시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문경호	최재명	김숙철	2017.10.16	
07	특허대리사무소 선정업무 편람 통합 및 공동출원, 특허기술평가 등 개정	박종광	오창수	김태옥	2019.06.20	
<u>08</u>	<u>출원 및 심사청구 절차 간소화 및 해외출원 결정 축소 등 개정</u>	<u>유재섭</u>	<u>최덕기</u>	<u>심은보</u>	<u>2023.06.12</u>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4/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차 례

1. 목 적	_____	5
2. 적용범위	_____	5
3. 일반사항	_____	5
4. 책임사항	_____	5
5. 용어의 정의	_____	5
6. 참고자료	_____	6
7.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_____	6
8. 출원 및 심사청구	_____	7
9. 보상	_____	11
10.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_____	12
11. 연차등록료 관리	_____	13
12. 폐기	_____	14
13. 특허대리사무소 선정 및 운영	_____	15
14. 권리이전 및 양수	_____	16
15. 유효성 평가	_____	17
16. 부록	_____	17
부록 1. 업무처리 흐름도	18
부록 2. 특허가치평가표	19
부록 3. 산업재산권 출원심의 평가표	21
부록 4. 특허대리사무소 평가기준	23
부록 5. 특허(실용신안) 발명신고서	24
부록 6. 디자인 발명신고서	25
부록 7. 상표 발명신고서	26
부록 8. 발명기여 상세내역 및 연구/발명 윤리서약서	27
부록 9.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 협약서	29
부록10.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	32
부록11. 직무기술서	33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5/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1. 목 적

이 절차서는 사규(기술관리 0200기술개발규정 제4장 지식재산권관리)에서 정한 산업재산권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확보 및 운영, 특허대리사무소 선정 및 운영 업무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사항

산업재산권 확보 및 운영, 특허대리사무소 선정 및 운영 업무는 ‘특허경영플랫폼’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4. 책임사항

구 분	책 임	책 임 사 항
주 관 부 서	처 장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제·개정 승인
	<u>실(부)장</u>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제·개정(안) 검토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유효성 평가결과 확인
	담 당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제·개정(안) 작성 산업재산권관리절차서 유효성 평가결과 검토 및 보고

5. 용어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기술개발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가.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한다.

나. 주관부서

산업재산권의 확보 및 사후관리를 총괄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운영 및 기술이전, 도입을 담당하고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본사 부서를 말한다.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6/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다. 기술실시(활용)부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한을 가진 본사 처(실) 및 사업소를 말한다.

라. 특허대리사무소

회사의 “산업재산권 관련업무”를 위임 받아 처리하는 변리사법 제6조의2에 의한 사무소 또는 동법 제6조의3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마. 특허경영플랫폼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바. 보유특허 평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등록 유지 및 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리성, 기술성, 상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 특허대리사무소 평가

주관부서가 특허대리사무소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아. 연차등록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권리유지를 위해서 특허청에 지불하는 관납료를 말한다.

6. 참고자료

가. 사규(기술관리 0200기술개발규정 제4장 지식재산권관리)

나.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7.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가. 구성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1) 위원장 : 기술기획처장

2) 위 원 :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내·외 전문가

3) 간 사 : 주관부서 부장

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7/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 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정책 결정
- 2) 기술이전·도입에 관한 중요사항
- 3) 산업재산권의 양도·폐기
- [4\) 출원유보, 방어, 실시보상금에 관한 사항](#)
- [5\) 기타 요청에 의한 변경](#)

다. 성립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의 안건을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8. 출원 및 심사청구

가. 발명 신고

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발명자는 특허경영플랫폼에 발명의 명칭, 권리 및 발명 구분 등 발명의 기본사항과 다음의 항목을 입력한다.
 - 가)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명신고서([부록 5, 6, 7](#))
 - 나) 발명기여 상세내역 및 연구/발명 윤리서약서([부록 8](#)), 상표출원(윤리서약서 불요)
 - [다\) 산업재산권 공동출원 협약서\(부록 9\)](#)
- 2) R&D과제 수행 및 TDR, 제안, 품질개선 등의 활동 중 발명이 완성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 종료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착안된 아이디어의 기술적 구성이 구체화된 때를 발명의 완성시점으로 본다) R&D과제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 발명자는 직무발명과 관련한 발명자의 선행논문 및 선행특허, 과제와 관련하여 인지한 선행논문 및 선행특허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 3) 2인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발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발명지분율을 상호 협의 결정한 후 주 발명자 소속부서장의 최종확인을 거쳐야 한다. 사외발명인 경우 발명과 관련된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한다.
- 4) 과제와 관련이 없는 발명으로서, 발명자 본인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무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신고시 발명 윤리서약서([부록 8](#))에 그 취지를 표시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주요 업무내용을 기재한 직무기술서([부록 11](#))를 첨부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8/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하여야 한다.

나. 출원 심의

1) 출원 심의 전 발명내용 확인 및 보완

가) 주관부서는 발명자가 작성 제출한 출원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출원심의 전 확인하여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보완을 요청한다.

나) 주관부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발명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발명을 하게 된 공동발명경위서([부록 8](#))를 요구 할 수 있다.

- (1) 과제발명으로서 과제수행자가 아닌 자가 발명자로 포함된 경우
- (2) 위탁(용역)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속하지 않은 한전 임직원이 발명자로 포함된 경우
- (3) [사내 공동발명자](#)의 수가 5인을 초과하는 경우

2) 선행기술조사

주관부서는 출원 전 발명내용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8. 가.1)항의 발명을 건별로 [특허대리사무소를 지정하고](#)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R&D과제의 직무발명으로서 선행기술을 자기신고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생략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선행기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출원심의대상 선정 : 주관부서는 선행기술조사가 완료된 발명을 심의 대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출원심의위원 선정


가) 주관부서는 발명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내](#) 전문가 3명 이상을 출원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심의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원심의를 불참시에는 과반수 이상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

나) 주관부서는 출원심의위원에게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심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안서약서’를 평가결과 입력 시 특허경영 플랫폼에서 [서약하도록](#) 한다.

다) [주관부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출원심의를 위탁할 수 있다.](#)

5) 발명지분을 확인

주관부서는 2인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발명한 건에 대해서 윤리서약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기여내역과 지분율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발명자에게 보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9/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완 요청한다.

6) 출원심의회 구성

출원심의회는 출원심의회위원과 해당 건의 선행기술조사를 담당한 특허대리사무소의 대리인이 참석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발명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7) 국내출원여부 결정

출원여부는 출원심의회위원이 ‘특허경영플랫폼’에서 심의결과를 입력하고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발명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발명등급	점 수	의 미	국내	비고
S급	<u>91점 이상 ~100점</u>	기술성 및 시장성이 매우 우수한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출 원	
A급	<u>81점 이상 ~91점 미만</u>	기술성 및 시장성이 우수한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출 원	
B급	<u>71점 이상 ~81점 미만</u>	기술성 및 시장성이 있고 국내에 권리확보가 요구되는 발명	출 원	
C급	<u>51점 이상 ~71점 미만</u>	기술성 및 시장성이 낮아 권리확보 필요성이 없는 발명	비출원	
D급	<u>51점 미만</u>	기술성 및 시장성이 매우 낮아 권리확보 필요성이 없는 발명	비출원	

※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결정

8) 출원심의 결과 공개

가) 출원심의 결과는 특허경영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나) 주관부서는 출원심의 후 발명의 승계여부를 발명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9) 해외출원여부 결정

가) 구체적인 해외 기술이전 계획이 있거나, 해외사업진출 결정 등 특별히 출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하여 해외출원심의 대상으로하며 발명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내외 전문가 3명 이상을 해외출원심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나) 해외출원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출원 여부(PCT 또는 개별국가)를 결정한다.

10) 우선심사 청구

주관부서는 국내출원심의 결과 특허심의 S등급, 사내·외 활용(예정 포함), 회사 전략 추진사업 등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0/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다. 출원처리

1) 국내출원 위임

주관부서는 국내출원 결정 발명에 대해 선정된 특허대리사무소에 출원을 위임하고 특허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명세서 초안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후 특허대리사무소에 출원을 요청한다.

2) 해외출원 위임

주관부서는 해외출원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 선정된 특허대리사무소에 출원을 위임하고 해외 단독출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원국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원 여부를 결정한다.

가) PCT 출원이 국제공개된 후 PCT 국제조사보고서 결과를 반영하여 국내단계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국제예비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PCT 미가입국 또는 개별국가 출원 시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라. 국내출원 심사청구 처리

1) 발명등급에 따른 국내출원 심사청구

가) S·A등급은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한다.

나) B등급은 출원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심사청구여부를 별도 심의 한다.

다) 심사청구 여부는 출원심의위원이 '특허경영플랫폼'에서 심의평가 결과를 입력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71점 이상은 채택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고, 71점 미만은 불채택으로 심사청구 진행을 포기 한다.

라) 출원 B등급의 경우라도 기술이전이 계약체결, 발명의 전사확대 등 실사가 확정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관부서는 확인을 거치 후 심사청구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사청구 심의는 발명등급 B등급을 대상으로 주관부서에서 발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내·외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마. 해외출원 심사청구 처리

1) 개별국가 출원의 경우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한다.

2) PCT 출원의 경우는 국내단계 진입시에 심사청구 한다.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1/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바. OA 대응처리

- 1) 특허대리사무소는 OA 발생 시 주관부서 및 발명자와 협의하여 의견서, 보정서 등을 제출한다.
- 2) 발명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부서에서 제출기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 3) 발명자는 특허거절결정 이후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
- 4) 출원담당자는 의견서 제출기한 연장, 재심사 청구 및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사. 등록처리

- 1) 주관부서는 등록 결정된 산업재산권의 등록여부를 30일 이내에 최종결정하여 특허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아. 출원 및 등록비용 처리


- 1) 주관부서는 발명의 출원,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대리인이 청구 시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지불한다.
- 2) 출원,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예산으로 집행하고 자산으로 취득한다.
- 3) 등록의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손익예산으로 처리한다.
- 4) 출원 또는 등록 후 직무발명을 특허경영플랫폼에 신고한 경우(미신고 직무발명)에는,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 신고일 이후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회사가 부담한다.

9. 보상

가. 보상금 산정

- 1) 출원, 등록, 처분, 실시, 방어, 출원유보보상금은 기술개발규정에 따르며, 출원유보, 방어, 실시보상금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 실시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익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가)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실시하여 수익 발생 등의 재무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부록 10) 및 객관적인 직접실시 사실 입증 자료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2/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를 본사 활용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나) 공사가 산업재산권을 공사에서 실시할 목적으로 구매규격, 절차서 등에 반영하여 제3자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부록 10)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SRM, ERP, 정산서 등)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3) 실시보상금 외 보상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지급한다.

4)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심의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원유보보상금 : 특허성, 기술성, 경제적 가치

나) 방어보상금 : 침해분쟁예방, 손해방지 등 공헌 기여도

다) 실시보상금 : 경비절감 또는 수익증대 효과, 보상규모(배정된 예산범위 내 등), 특허분석평가시스템 및 특허가치평가표(부록2)를 활용한 보상기준

나. 보상금 지급

1) 출원 및 등록보상금은 반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보상금은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해당 보상금에 발명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3) 직접자기실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 수	최초 실시보상금 (최초 실시확인시 1회지급)	계속 실시보상금 (해당년도 신규실시 확인시 지급)
S급	91~100점	자기특허의 (출원 및 등록 소요비용) × 1/2	실시 해당년도 자기특허 유지비용×5
A급	81~90점	자기특허의 (출원 및 등록 소요비용) × 1/2	실시 해당년도 자기특허 유지비용×4
B급	71~80점	자기특허의 (출원 및 등록 소요비용) × 1/2	실시 해당년도 자기특허 유지비용×3
C급	51~70점	자기특허의 (출원 및 등록 소요비용) × 1/2	실시 해당년도 자기특허 유지비용×2
D급	50점 이하	자기특허의 (출원 및 등록 소요비용) × 1/2	실시 해당년도 자기특허 유지비용×1

10.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가.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대상 선정

1) 평가대상은 등록후 3년 경과된(관납료 납부 또는 예정) 산업재산권을 대상으로 한다.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3/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나.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 1)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는 1년 주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는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3) 서면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기술평가표’에 따라 시장성과 기술성을 평가한다.
- 4) 기술평가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서면평가결과는 시장성(50점) 및 기술성(50점) 분야의 개별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u>등급</u>	<u>합산점수</u>	<u>비고</u>
<u>S급</u>	<u>91점 이상 ~ 100점</u>	
<u>A급</u>	<u>81점 이상 ~ 91점 미만</u>	
<u>B급</u>	<u>71점 이상 ~ 81점 미만</u>	
<u>C급</u>	<u>51점 이상 ~ 71점 미만</u>	
<u>D급</u>	<u>51점 미만</u>	

※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결정

다.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결과처리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결과에 따라 7년 경과된 B등급 및 C, D등급은 폐기대상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한다.


11. 연차등록료 관리

가. 연차등록료 관리 위탁

국내 및 해외 산업재산권의 연차등록료 관리를 위하여 특허관리 전문기업 1개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연차등록료 납부

- 1) 연차등록료 담당자는 매월 연차대리인이 제출한 연차등록료 납부대상 자료를 특허경영플랫폼의 산업재산권 등록정보와 비교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차등록료 관리 위탁대리인에게 통보한다.
- 2) 특허대리사무소에서 등록처리한 산업재산권 정보가 즉시 연차등록료 관리 위탁대리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허대리사무소를 관리한다. 전달 누락으로 산업재산권 권리소멸 시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특허관리 전문기업의 실수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및 추가비용을 특허관리 전문기업에게 청구한다.
- 3) 공동권리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등록료를 공동 부담하는 경우 공동권리자에게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4/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지분율에 따른 연차등록료를 청구한다. 공동권리자가 연차등록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권리포기각서를 제출받은 후 권리지분인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연차등록료 비용 지불

연차등록료 담당자는 연차대리인이 청구한 연차등록료 비용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손익예산으로 지불 처리한다.

12. 폐기

가. 폐기대상 선별


산업재산권 유지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폐기 대상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 디자인 및 상표는 활용부서의 활용여부 조회만으로 폐기대상으로 분류한다.

나. 활용부서의 의견 조회

- 1) 보유 산업재산권 평가 결과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산업재산권에 대해 활용부서의 의견을 조회한다.
- 2) 활용부서의 의견 조회 시에는 활용부서 의견조회 결과표의 폐기대상 산업재산권의 명세서를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필요시 활용부서의 의견에 대해 주관부서와 활용부서 간 공동검토를 시행한다.

다. 폐기 여부 결정 및 후속 조치

- 1) 주관부서장은 최종 폐기 결정을 위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 2) 간사는 활용부서 의견조회 및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에 제출 한다.
- 3)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는 활용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 4) 폐기대상 산업재산권은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1개월간 사내 공지한다. 폐기 결정된 산업재산권의 발명자는 공지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폐기대상 산업재산권의 이전을 주관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5) 주관부서는 이전 신청된 산업재산권의 발명자가 복수일 경우에 발명자간 이전 형태 및 지분율 합의서를 받아야 하고,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산업재산권은 소액판매, 무상나눔 등 양도를 추진한다. 양도에 필요한 비용은 양도자가 부담한다.
- 6) 발명자, 소액판매, 무상나눔 등 미 양도 산업재산권은 연차등록료 특허관리 전문 기업에 통보하여 연차등록료 납부를 중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소멸시킨다.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5/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13. 특허대리사무소 선정 및 운영

가. 계약기간

- 1) 특허대리사무소의 산업재산권 관련업무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선정 공고를 실시하여 특허대리사무소를 재선정하며, 선정된 특허대리사무소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추가로 특허대리사무소를 선정한다. 단, 해지된 기존 특허대리사무소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추가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3) 추가로 선정된 특허대리사무소의 협약기간은 해지된 기존 특허대리사무소 협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선정 기준

- 1) 산업재산권 위임 업무를 위해 4개 특허대리사무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선정 수를 가감할 수 있다.
- 2) 특허대리사무소의 선정은 특허대리사무소 제안서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산업재산권의 권리 획득 및 보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선정 및 평가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 선정 절차

- 1) 주관부서장은 특허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며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 2) 특허대리사무소 선정 공고문은 전자조달시스템(SRM)에 일정기간 게시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자격, 선정방식, 제안서 작성양식,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포함 한다.
- 3) 특허대리사무소가 용역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에는 특허대리사무소 일반현황, 변리사 등 인력보유 현황, 특허사건(출원, 등록, 심판, 소송)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특허대리사무소 선정은 용역 관리 규정에 따른다.

라. 특허대리사무소 업무 범위

산업재산권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허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1)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
- 2) 산업재산권관련 심판, 소송, 분쟁 업무
- 3) 선행기술, 기술동향, 침해성 검토 등 분석업무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6/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 4) R&D과제 IP 발굴 및 권리화 업무
- 5) 산업재산권 관련 자문, 자료조사, 의견제시, 회의참석,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6) 기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요청 사항

만. 특허대리사무소 평가

- 1) 특허대리사무소의 업무수행능력 및 제공 서비스 품질, 만족도 평가를 위해 특허대리사무소 평가를 계약기간중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 2) 특허대리사무소 평가는 특허대리사무소의 전문역량, 관리능력 및 특허컨설팅 항목을 평가하며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수립하여 활용한다. 특허대리사무소 평가 항목별 항목수와 배점은 특허대리사무소 평가기준(부록 4)을 활용한다.
- 3) 특허대리사무소의 평가결과는 특허대리사무소에 공개하며 수입건수 제한 및 계약 해지의 사유 등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점수가 1회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특허대리사무소에 경고 문서를 발송한다.

(나) 평가점수가 2회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는 6개월 동안 출원 위임을 중지한다.

(다) 평가점수가 3회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는 계약을 해지한다.

(라) 특허대리사무소 평가결과 출원 위임이 중지된 경우는 다른 특허대리사무소에 출원을 위임한다.

바. 특허대리사무소 계약 해지

선임된 특허대리사무소가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대리사무소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특허대리사무소의 협약해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 3)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
- 4) 특허대리사무소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위임 보수

- 1) 산업재산권 관련업무의 위임에 따른 비용은 특허대리사무소 선정 공고한 위임보수 기준표의 기준과 특허대리사무소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 2) 위임보수 기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이 포함하며 각종 관납료는 실비 정산한다.

14. 권리이전 및 양수

가. 주관부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이전 또는 양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 특허대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7/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리사무소에 위임 처리한다. 단, 권리 양수 시 양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 1) 권리이전·양수 요청부서는 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권리이전·양수에 따른 소요비용 및 향후 권리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사전에 협의 결정한다.

나. 출원 또는 등록 후 직무발명을 신고한 경우(미신고 직무발명)에는 승계 여부를 심의하여 권리이전을 추진한다.

15. 유효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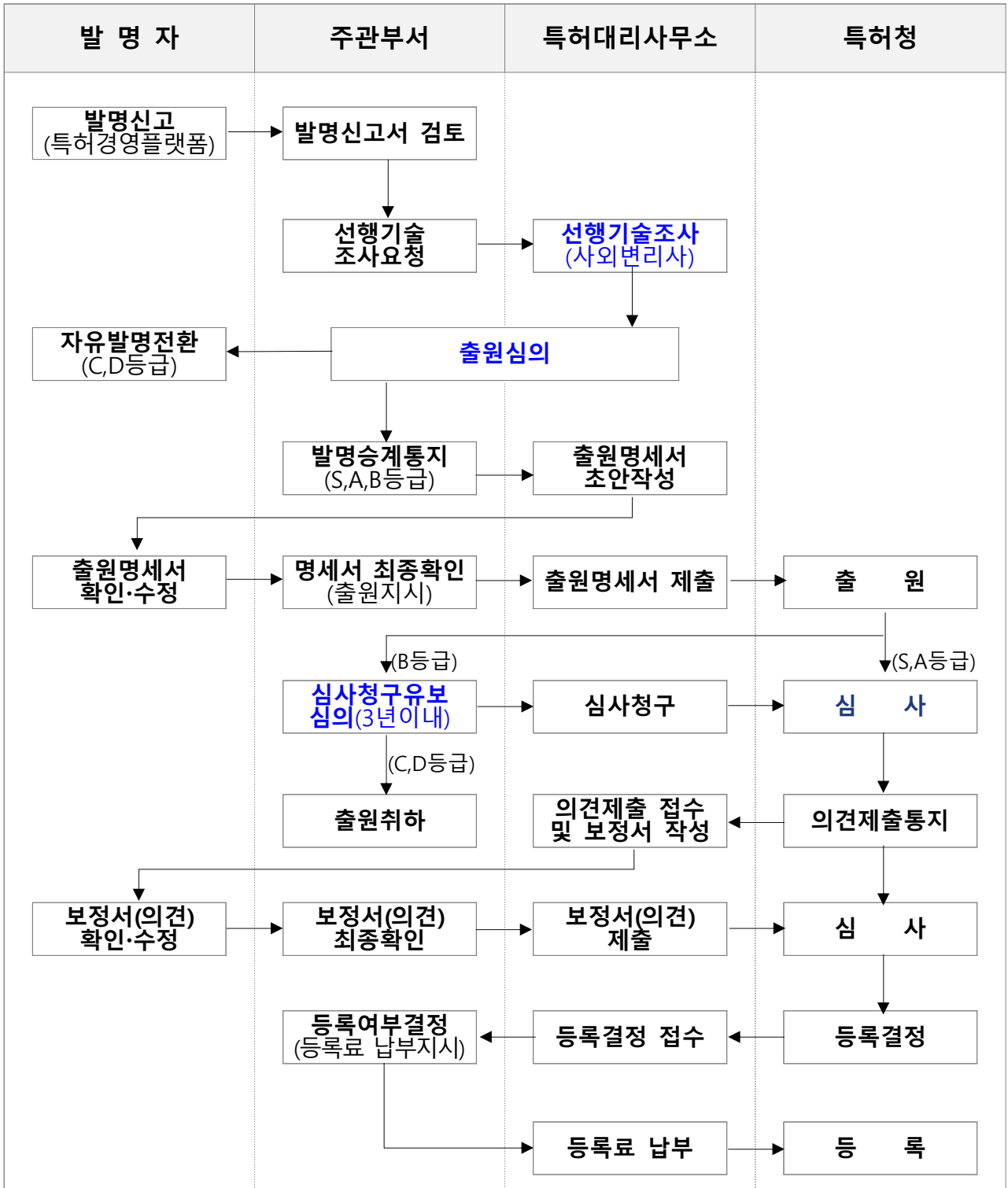
본 절차서는 2년 주기로 유효성을 평가한다.


16. 부록

- [\[부록 1\] 업무처리 흐름도](#)
- [\[부록 2\] 특허가치평가표](#)
- [\[부록 3\] 산업재산권 출원심의 평가표\(대내외\)](#)
- [\[부록 4\] 특허대리사무소 평가기준](#)
- [\[부록 5\] 특허\(실용신안\) 발명신고서](#)
- [\[부록 6\] 디자인 발명신고서](#)
- [\[부록 7\] 상표 발명신고서](#)
- [\[부록 8\] 발명기여 상세내역 및 연구/발명 윤리서약서](#)
- [\[부록 9\]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 협약서](#)
- [\[부록 10\]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
- [\[부록 11\] 직무기술서](#)

[부록 1]

업무처리 흐름도



 기술기획처	<h2 style="margin: 0;">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h2>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19/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2]


특허가치 평가표

등록번호	평가일자		
발명의 명칭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점수
관리 / 기술성	기술 완성도	①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 기술 실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②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중에 있는 기술이다. ③ 연구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④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는 기술이다. ⑤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기술이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의 속성	①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기본발명이다. ② 기존기술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발명 또는 기존기술 대비 개선, 개량의 정도가 큰 발명이다. ③ 개량의 정도가 보통인 발명이다. ④ 개량의 정도가 소폭이어서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발명이다. ⑤ 기존기술 대비 단순히 다른 변형예(실시예)를 제시한 수준의 발명이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② ③ ④ ⑤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①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며, 최신의 선도기술이다. ②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경쟁 또는 유사기술이 존재한다. ③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부합되지만 대체기술이 존재한다. ④ 기술군의 발전방향에 배치되기는 하나, 활용을 기대할 수는 있다. ⑤ 기술군의 발전방향과 완전히 배치되며, 활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① 도입기의 기술로 상당기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장기의 기술로 활용도가 검증되고 있다. ③ 성숙기의 기술로 활용성이 약해지고 있다. ④ 쇠퇴기의 기술이지만 활용도가 남아있다. ⑤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이고 활용이 제한적이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② ③ ④ ⑤
	관리의 강도	① 도입기의 기술로 상당기간 동안 활용이 가능하다. ② 성장기의 기술로 활용도가 검증되고 있다. ③ 성숙기의 기술로 활용성이 약해지고 있다. ④ 쇠퇴기의 기술이지만 활용도가 남아있다. ⑤ 쇠퇴기에 접어든 기술이고 활용이 제한적이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① ② ③ ④ ⑤
평점소계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점수	
시 장 성 성	상용화가능성	a)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b) 관련기술이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 c)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 향후 몇 년 이내에 상용화 될 가능성이 크다. d) 관련시장이나 기술의 추이를 볼 때,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상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 e) 관련기술이 시장에서 상용화 된 사례가 없거나 또는 상용화 되었다더라도 성공한 사례는 없으며, 향후에도 가능성은 낮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a) b) c) d) e)	
	산업적 파급효과	a)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b)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비교적 다양한 편이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비교적 큰 편이다. c)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는 작은 편이다. d)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비교적 한정적이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작 은 편이다. e) 기술을 적용 가능한 제품의 종류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한정적이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거의 없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a) b) c) d) e)	
	시장 성장성	a) 시장이 성장기에 있다. b) 시장이 도입기 또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드는 상태이다. c) 시장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상태 또는 성숙기에 있다. d) 시장이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상태이다. e) 시장이 쇠퇴기에 있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a) b) c) d) e)	
	기술 수요 가능성	a) 평가대상 특허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능성이 매우 크다. b) 평가대상 특허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능성이 크다. c) 평가대상 특허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능성이 보통이다. d) 평가대상 특허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능성이 적다. e) 평가대상 특허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능성이 매우 적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a) b) c) d) e)	
	시장진입 용이성	a) 법,제도적 장려요인이 있어 시장진입이 용이하다. b) 향후 법,제도에 장려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c) 법,제도적 장려 내지 제약요인이 없다. d) 향후 법,제도에 제약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e) 법,규제 제약요인이 많고 승인이 까다로워 시장진입이 매우 어렵다.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a) b) c) d) e)	
평점소계				
총 계				

평가일 : ○○○○년 ○○월 ○○일


평가 위원 : (소속/성명) _____ (서명)

 기술기획처	<h2 style="margin: 0;">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h2>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1/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3-1]

산업재산권 출원심의 평가표(사내용)


구분	심의항목	평가내용	점수
특허성	권리등록 가능성	동일한 선행기술이 없고, 유사 선행기술등과는 차이가 있어 특허권리로 등록 가능하다 (Y), 없는 경우 (N)	Y/N
기술성	R&D 부합성	① R&D, 현장기술개발, 중기, TDR과제 등의 성과물 또는 직무발명으로서 회사정책에 부합하고 수익창출 또는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매우 큰 기술이다. ② R&D, 현장기술개발, 중기, TDR과제 등의 성과물 또는 직무발명으로서 회사정책에 부합하고 수익창출 또는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큰 기술이다. ③ 회사 수익 창출 또는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낮은 기술이다.	1~5
	발명기술의 구성	①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문제해결 정도가 큰 발명기술이다. ②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또는 문제해결 정도가 보통인 발명기술이다. ③ 종래기술과 비교할 때 개량의 정도 및 효과가 없는 발명기술이다.	1~5
	경쟁성	① 종래기술에 비해 현저한 이점이 존재한다. ② 종래기술에 비해 현저한 이점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③ 종래기술에 비해 현저한 이점을 찾을 수 없다.	1~5
	기술의 완성도	① 시제품 제작, 시험등의 결과로 사업화 또는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실현 가능성이 확인된 기술이다. ② 사업화 또는 기술 실현 가능성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기술이다. ③ 사업화 또는 기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술이다.	1~5
	기술수명	① 기술수명 주기상 도입기의 기술로 10년 이상 활용 가능하며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술이다. ② 기술수명 주기상 도입기의 기술로 10년 이상 활용 가능하며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술이다. ③ 기술수명 주기상 도입기의 기술로 10년 이상 활용 가능하며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1~5
	적용범위	① 복수의 시장 또는 산업분야에 까지 적용 가능한 범용기술이다. ② 단일 시장 분야의 여러 제품군 또는 제품으로 적용 가능하다. ③ 복수제품, 타제품군, 타 기술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이 없다.	1~5
시장성	권리 활용성	① 권리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실시 대상기업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 ② 권리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정부과제 성과물로 참여기업에게만 실시 가능한 기술이거나 또는 권리가 공동이나 별도로 공유권자와 협약 체결 하여 제3자에게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제한이 없다. ③ 권리가 공동으로 실시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하지 않았다.	1~10
	수요성	① 현재 발명기술에 대해 요구가 많으며 그 수요는 충족되어 있지 않다. ②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다. ③ 발명기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거나 파악되어 있지 않다.	1~10
	잠재 성장성	①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이 존재하며 그 잠재적 성장정도도 크다. ②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이 존재하나 본 발명으로는 시장확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③ 적용 가능한 틈새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틈새시장이 발생기에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1~5
	상용화 시기	① 향후 2년 이내에 적용이 가능하다. ② 향후 10년 이내에 적용이 가능하다. ③ 적용가능성이 불확실하다.	1~5
비고			
합계		100점 만점(가중치 × 2)	100점

 기술기획처	<h2 style="margin: 0;">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h2>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2/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3-2]

산업재산권 출원심의 평가표(사외용)


구분	평가내용	점수
특허성	동일한 선행기술이 없고, 유사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있어 특허 신규성이 있는 경우 Y, 없는 경우 N	Y/N
기술성	<p>선행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을 평가 (기술 부상성)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가 최근 떠오르는 정도 (기술 완결성) 발명의 구체적인 개발 수준</p> <p> ㉠ 매우우수 36~40점 ㉡ 우수 31~35점 ㉢ 보통 26~30점 ㉣ 미흡 21~25점 ㉤ 매우미흡 0~20점 </p> <p>(평가의견) (예시) 본 발명은 배전 공사 근로자의 추락방지에 관한 기술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발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징이 잘 기술됨</p>	0~40점
시장성	<p>발명이 제품 또는 공법에 적용될 때 원가절감,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성을 평가함</p> <p> ㉠ 매우우수 56~60점 ㉡ 우수 51~55점 ㉢ 보통 46~50점 ㉣ 미흡 41~45점 ㉤ 매우미흡 0~40점 </p> <p>(평가의견) (예시) 본 발명을 적용한 제품은 기존 제품대비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음</p>	0~60점
점수 합계		0~100점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3/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4]

특허대리사무소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특허 명세서 평가 (50)	○ 명세서 작성 적정성 -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발명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5개 항목 평가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25
	○ 특허 청구범위 작성 적정성 - 청구항 개수의 적정성, 청구항 구성력, 명확성 등 4개 항목 평가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20
	○ 도면 작성 적정성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5
선행기술조사 평가 (10)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품질 우수성 - 검색방법 및 검색능력, 보고서 품질 등 2개 항목 평가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10
OA대응 능력평가 (10)	○ OA대응의 적극성 및 적정성 - 의견제출 통지서 분석,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내용 등 2개 항목 평가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10
출원요청 기간준수 (5)	○ 출원요청 기한 준수 - 출원요청 기한(30일) 초과 건 마다 1점씩 감점 - 단, 외부 귀책건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	5
중간사건 기일준수 (5)	○ 중간사건 기일 준수율 - 중간사건 기일 1회 연장 시 마다 1점씩 감점	5
출원심의 참여도 (5)	○ 사외변리사의 출원심의 참여 적극성 - 출원심의 전 사전준비 적정성 및 참여 태도 등 2개 항목 평가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5
전담변리사 만족도평가 (10)	○ R&D과제 전담변리사 상담후 발명자 만족도 평가 - 평가 : 상 5점, 중 3점, 하 1점 ○ 전담변리사의 회신속도 및 상담태도 등 컨설팅 평가	10
컨설팅 활동평가 (5)	○ 발명자 및 특허전문인력에 대한 특허컨설팅 기여도 - 평가 :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미달 1점	5
총 계		100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4/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5]

특허(실용신안) 발명신고서

1. 발명의 명칭

-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 (약자 사용 금지)

2. 종래 기술의 설명 및 문제점

- 발명이 해당하는 분야에 있어서 기존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해 설명
- 종래의 장치, 기구의 구조나 동작원리를 도면 등을 참조하여 설명
- 종래 기술이 가졌던 불편한 점, 고비용, 저효율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기재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1)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적 원리 요약

- 발명에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결방법의 요지만 기재
-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의 (2)항에 기재

(2) 발명의 구성 및 전반적인 동작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개발한 기구, 장치, 회로 등의 구성을 반드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
- 기구, 장치 등의 동작원리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 일반적으로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도면을 작성한 후에, 도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재

(3) 발명의 다른 실시예

- (2)항에 기재된 발명의 주요 실시예 이외에 다른 실시예가 있다면 도면을 작성하고 작성된 도면을 참조하여 주요 실시예와의 차이점 기재
- 다른 실시예는 2개 이상 기재할 수 있으며 실시예가 많을수록 넓은 권리범위를 얻을 수 있음

4. 발명의 효과

- 발명의 구성 및 동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개선점 및 효과 설명
- 새로운 성능이나 경제성을 데이터, 도표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설명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5/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6]

디자인 발명신고서


1. 디자인의 명칭 :

- 입체디자인 : 사시도 및 6면도와 필요한 참고도
 - 6면도 : 정투상도법에 의한 정/배면도, 좌/우측면도, 평/저면도
- 평면디자인 : 표면도 및 이면도

【디자인 도면】

2. 디자인의 설명 :

※ 물품의 재질 및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간략하게 기재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6/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7]

상표 발명신고서


1. 상표의 명칭 :

【상표 견본】

가로, 세로 8 cm 이내의 크기로 사각형 안에 작성

2. 지정 상품(서비스업) :

- 상표가 사용될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 기재 예시) 접지봉, 전선, 전기판매업 등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7/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8]

발명기여 상세내역 및 연구/발명 윤리 서약서				
발명명칭				
윤리서약	<p>본인은 본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로서 본인의 기여를 과장 및 허위 기재하지 않으며,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지 않았으며, 도용·위조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금전상의 보상요구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다음 발명 기여율에 상호 협의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번호	발명자	발명 기여 내역 (상세)	기여율 (%)	날인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p>※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p> <p>가. 발명자에게 발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발명경비(자금이나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위탁한 사람(사용자, 단순후원자, 위탁자)</p> <p>나. 개발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 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p> <p>다. 타인이 제시한 착상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p> <p>라.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지시한 실험 등을 수행한 사람(단순 보조자)</p> <p>마. 연구 착상 없이 발명의 과정에서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한 사람</p> <p>바. 연구자 및 연구에 대하여 일상적 관리를 한 사람</p> <p>사. 기여율 결정 확인의 과정에서 발명에 관계된 단순한 내용을 조언 또는 제시한 사람</p>				

(※ 연구발명의 경우 발명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구체적 기여 근거 첨부)

공동발명경위서

성명		사번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29/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9]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 협약서

한국전력공사(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산업재산권을 공동 출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산업재산권의 소유)


- ① “갑”과 “을”은 발명진흥법 제14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근거하여 “갑”과 “을”의 종업원등이 공동 발명한 직무발명 (발명의 명칭 : ○○○)에 대해 소속된 종업원이 가지는 지분을 승계한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② “갑”과 “을”은 “갑”의 지분을 (%), “을”의 지분을 (%)로 산업재산권을 공동 소유한다.
- ③ 지분을 산정은 별도의 “지분율 산정 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2조 (산업재산권 출원 및 비용분담)

- ① “갑”은 공동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연차 등록업무 등을 전담 관리한다.
- ② 산업재산권 공동 출원, 설정등록 및 연차등록에 따른 관리비용은 “갑”과 “을”의 산업재산권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 ③ 공동권리자가 연차등록료를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연락두절되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제1조②항의 지분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산업재산권 등의 실시허여, 양도 포기)

- ①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갑”이 발주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적용하는 경우에 “갑”은 “을”의 동의없이 “을”이외에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갑”은 “을”이외의 제3자에게 실시하게 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다른 기술료 수입은 “갑”과 “을”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② 공동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 허여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간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이외 자를 대상으로 본 산업재산권의 실시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

 기술기획처	<h2>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h2>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30/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우 그 매출금액의 일정부분을 기술료로 책정하여 지분율에 따라 “갑”에게 배분한다.

- ④ 본 산업재산권의 기술료율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산정 결정한다.
- ⑤ “갑”은 “을”이 부도, 폐업 시에는 “을”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산업재산권을 제 3자에게 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회사의 변경 등)

공동권리자는 본 협약체결 이후 법인의 상호,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 ① 본 협약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을”과 “갑”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월 0일

“갑”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사장 직무대행 부사장 0 0 0 (직 인)

“을” : (업체 주소)

(주)000 대표이사 0 0 0 (직 인)

 기술기획처	<h2 style="margin: 0;">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h2>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31/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h3 style="margin: 0;">산업재산권 지분 약정서</h3>	
출원인	<input type="radio"/> 명칭(성명) : 한국전력공사 (인) <input type="radi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출원인	<input type="radio"/> 명칭(성명) : (인) <input type="radio"/> 주소 :
출원인	<input type="radio"/> 명칭(성명) : (인) <input type="radio"/> 주소 :
출원인	<input type="radio"/> 명칭(성명) : (인) <input type="radio"/> 주소 :
출원인	<input type="radio"/> 명칭(성명) : (인) <input type="radio"/> 주소 :
사건의 표시	<input type="radio"/>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번호 : <input type="radio"/> 발명의 명칭 :
취지	위 사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지분을 하기와 같이 약정함 한국전력공사 : % <input type="radio"/> : % <input type="radio"/> : % <input type="radio"/> : % <input type="radio"/> : %
지분약정일자	20 년 월 일

 기술기획처	<h2 style="margin: 0;">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h2>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32/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10]

산업재산권 실시 보고서

산업 재산권 현황	분 야	<u>직접(○) 구매규격 및 절차서()</u>																			
	구 분	<u>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u>																			
	명 칭																				
	출원번호	제10-2023-0000000호	출원일자	2023.01.01																	
	등록번호	제10-0000000호	등록일자	2023.01.01																	
	권 리 자 (지분율)	한국전력공사(100%)																			
	발 명 자 (지분율)	특허권(사번) (50%), 산재권(사번) (50%)																			
	권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실시내용	<u>[구체적으로 기록 : 직접실시, 규격서, 절차서 등]</u> <u>- 본사 승인 근거</u> <u>- 세부내용, 산재권 청구항 적용 여부 확인(예시)</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청구항</th> <th style="text-align: center;">청구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활용부서 적용검토</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청구항	청구내용	활용부서 적용검토	비고	1		○		2		×		⋮						
청구항	청구내용	활용부서 적용검토	비고																		
1		○																			
2		×																			
⋮																					
실시 효과	정성적																				
	정량적	<u>[경비절감 또는 이익발생 금액 산출내역]</u> <u>[공사가 실시한 실적내역 (원가×구매수량)]</u>																			
증빙자료	<u>※ 증빙자료 미 제출시 인정 불가</u>																				

작성자(확인자) : ○ ○ ○ (서명)

※ 직접실시는 본사 활용부서장의 적용여부 확인을 득한 후 주관부서로 제출

 기술기획처	산업재산권 관리 절차서	업무표준 No	H0-기술-절차-0001	
		개정·페이지	8	33/33
		제·개정일자	2023. 06. 12	

[부록 11]

직무기술서				
서약서	본인은 본 발명에 직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로서 본 발명이 본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와 무관함을 본인의 기여를 과장 및 허위 기재하지 않았음을 서약합니다.			
사번		성명		(인)
소속(처/실)	기간	담당업무		

(※ 직무무관으로 체크한 발명자별로 작성하세요)